

1. 제정이유

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디지털전환 등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일자리 위험에 대응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, 일자리 이동 및 노동전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「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이 제정(법률 제19760호, 2023. 10. 24. 공포, 2024. 4. 25. 시행)됨에 따라,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고용안정 지원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(안 제2조)

고용안정을 위해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항에 지역의 고용유지·창출 지원 등이 포함되도록 규정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관계부처(기관) 합의 진행 중

라. 기타 : 1) 입법예고(2024. 1. 11. ~ 2024. 2. 20.) 예정
2) 행정규제 : 진행예정

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등 지원체계 구축 등) 법 제13조제2항 제6호에서 “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”이란 “산업전환에 따라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의 고용유지·창출 지원 또는 취업지원 등”을 말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4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.